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중 호남권질병 대응센터의 관할구역 및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공항지소,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 정원 2명(방호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의 직렬을 변경(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

11.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3의 국립목포검역소의 위치란 및 같은 표 국립여수검역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70”을 “72”로, 운전서기보 “6”을 “5”로, 방호서기보 “2”를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 ③ (생략) ④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8.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⑥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신 · 구 정원 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u>70</u>	<u>72</u>	+2
운전서기보	<u>6</u>	<u>5</u>	-1
방호서기보	<u>2</u>	<u>1</u>	-1
·	·	·	
·	·	·	